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200 이하	150,000
4	200 초과 300 이하	187,500
5	300 초과 400 이하	225,000
6	400 초과 500 이하	287,500
7	500 초과 600 이하	325,000
8	600 초과 700 이하	350,000
9	700 초과 800 이하	375,000
10	800 초과 900 이하	400,000
11	900 초과 1,000 이하	425,000
12	1,000 초과 2,000 이하	437,500
13	2,000 초과 3,000 이하	450,000
14	3,000 초과 4,000 이하	462,500

15	4,000 초과	5,000 이하	475,000
16	5,000 초과	6,000 이하	487,500
17	6,000 초과	7,000 이하	500,000
18	7,000 초과	8,000 이하	512,500
19	8,000 초과	9,000 이하	525,000
20	9,000 초과		537,500